



한의학의 미래, 의료의 미래
서울특별시한의사회
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

수 신 분회장

(경유) (사무국장)

제 목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등 관련 회원 안내 요청

1.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대한의-2025-03-0098(2025.03.14.)
3. 중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(2025.02.25.)를 통한 '2024년 하반기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현황 및 이의제기 다빈도 항목 등 공유사항'을 알려온 바, 첨부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귀 분회 소속 회원분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 : 중앙회 보험국 (☎ 02-2657-5057, 5036, 5077)

□ 첨부 : 관련 안내문 1부. 끝.

서울특별시한의사회



국장 윤상환

처장 김태준

협조

서한의 - 제 462 호 (2025.03.14.)

우)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6 테헤란오피스빌딩 206 / 홈페이지 : <https://www.skma.or.kr>

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: (대)02-960-0811 / 팩스 02-6944-8075 / E-mail : skma@skma.or.kr

□ 첨부 (안내문)

자동차보험 다중시술 등 관련 안내

□ 한의과 다중시술 심의사례 공개('24.12.30.) 이후 진행사항 등

- 심평원에서는 우리협회와의 협의 등에 따라, 다중시술 심사 시 해당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협회에서는 해당 공개심의사례를 비롯하여 한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제한적 심사에 대해, 심평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국회 등에 의해 '한의과 다중시술'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, 심평원에서는 반기별로 이를 모니터링하여 다중시술 실시율 상위 기관에 대해 자율개선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습니다.
 -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다중시술 진료분에 대한 심사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 - 다만, 두 차례 이상 안내문을 송부받을 경우 심평원 현지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, 다중시술 진료 시 진료기록부에 환자상태, 진료내역, 치료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·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한의과 다중시술 모니터링 및 대상기관 안내

- (다중시술) ①침, ②구술, ③부항, ④약침술, ⑤한방물리요법Ⅰ*, ⑥한방물리요법Ⅱ** 6종을 같은 날 동시 실시
 - * 한방물리요법Ⅰ: 추나요법, 견인요법, 도인운동요법, 근건이완수기요법
 - ** 한방물리요법Ⅱ: 초음파·초단파·극초단파요법, 경피전기자극요법(TENS), 경근간섭저주파요법(IFT)
- (모니터링 결과 안내 대상기관 선정기준) '24년 하반기 다중시술 청구기관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기관

※ 다중시술 상위기관 선정기준 (①, ②, ③ 모두 충족)

① 다중시술 실시율* 90백분위 이상

* 다중시술 실시율: (다중시술 실시 건수 / 한방 외래 건수) × 100

② 분석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다중시술 청구 발생

③ 다중시술 청구 건 50건 이상
- (모니터링 결과 안내 대상기관) 총 203개소
 - (종별) 한의원 175개소, 한방병원 26개소, 병원 2개소
 - (차수) 1차('24년 하반기 신규) 103개소, 2차('24년 상반기 및 하반기 연속) 100개소

○ **(안내방법 및 시기)** 선정차수별로 표준안내문을 구분하여 3월 14일경 우편 발송 예정

- (1차 안내기관 103개소) 표준안내문* 발송

* 동일 종별 다종시술을 평균 및 해당기관 이전반기 비교

- (2차 안내기관 100개소) 현지확인심사 연계 내용*을 포함한 표준안내문 발송

* 한의과 다종시술 관련, 지속적으로 자율개선 안내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확인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
□ **이의제기 다빈도 항목 관련 유의사항 안내**

○ '24년 이의제기 유형 분석 결과, 필수 사항 미신고*로 인한 심사조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

* 약침약제, 한방파스, 한방물리요법 장비, 건강보험 치료재료인 부항컵, 추나요법 교육 이수 미신고 등

○ 이에, **필수 신고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명세서 청구 전 신고**를 통해 이의제기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붙임자료 참조]

■ **붙임 :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 신고방법 등 안내**